

環境訴訟의 諸問題

고유미*, 김태형*, 이현식*, 남혜성*, 박대원*
지도교수 : 황석갑**

〈목 차〉	
Abstract	III. 環境訴訟의 審理
I. 序論	IV. 環境訴訟의 現代的 課題
II. 環境紛爭의 處理	참고문헌

Abstract

More and more people have suffered from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our industry. They want to be compensated for loss and furthermore hope to prevent their neighbor circumstances from being polluted. It's the reason why the environmental action occurred. Our team will clarify our environmental right,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action and general problems of our current system. On the basis of them we will present several improvable methods.¹⁾

Keywords : 環境訴訟

1. 序論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급속한 산업의 발달로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의 司法的 救濟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소송이 차츰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환경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이 장에서는 환경권과 환경분쟁 현황에 대한 언급을 통해 그 법적 근거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1.1 環境權

(1) 憲法上 規定

헌법 제 35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環境權의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環境權에 관한 法律留

* 학생회원, 한국해양대학교 경찰학과

** 정회원,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保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국가는 住宅開發政策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2) 環境權의 概念

狹義의 環境權은 汚染되거나 不潔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 당하거나 훼손 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汚染되거나 不潔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公權力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豫防 또는 排除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廣義의 環境權은 狹義의 環境權은 물론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비단 汚染되거나 不潔한 환경의 豫防 또는 排除라고 하는 消極的 성격 뿐만 아니라 積極的으로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헌법 제35조의 環境權은 넓은 의미의 環境權으로 이해 해야할 것이다. 헌법 10조의 幸福追求權, 35조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36조 3항의 保健에 관한 권리 모두가 環境權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¹⁾

(3)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1.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private의 행위로 말미암은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은 損害賠償請求와 留止請求가 주된 것이다. 損害賠償請求는 환경피해를 금전적 또는 물질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環境政策基本法 제31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無過失責任을 진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구제방법은 事後的 구제방법이기 때문에, 환경피해의 발생과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事前的 구제방법으

로서 留止請求가 불가피하다. 留止請求는 환경피해가 현실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 피해자가 환경피해의 排除 또는 豫防을 법원에 구하는 방법이다.²⁾

2. 公權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環境權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행장이나 고속도로의 건설 등으로 驚音公害를 야기하거나 산업단지에 公害產業을 유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環境權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3자의 환경피리를 허용하거나 默認함으로써 소극적으로 環境權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침해에 대하여는 국가 등을 상대로 行政爭訟·國家賠償·損失補償·憲法訴願을 제기하거나 行政介入을 청구할 수 있다.³⁾

1.2 環境紛爭現況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의 조정신청 현황을 단적인 예로 살펴본다. 왜냐하면 우리 司法當局은 유감스럽게도 環境訴訟事件의 統計的 파악에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오고 있으며, 司法官鑑은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원별로 “公害事件”이란 이름 아래 環境訴訟事件의 연간 접수사건을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1990년도에는 제1심 법원에 28건, 抗訴審법원에 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있고, 1991년도에는 제1심 법원(서울)에 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 오염원인별 현황

◎ 총 334건의 사건 중 소음·진동 분야가 7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기분야 12%, 수질분야 8%, 해양분야 3%이다.

◎ '99년 신청사건의 경우는 소음·진동분야가

1) 김철수, “한국에서의 環境權과 環境立法”, 1995

2) 권영성, “憲法學概論”, 法文社, 1998

3) 環境權에 관한 憲法 제 35조 제 1항은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입법부는 環境權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의 의무를 지고, 집행부와 사법부는 환경영립법에 위반하여 環境權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행정관청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環境影響評價를 하여야 하고 환경 훼손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

87%를 차지함으로써 아파트신축공사나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피해호소가 대부분이다. (표 1 참조)

<표 1> (단위:건수)

구분	계	소음·진동	대기	수질	해양
계(%)	334 (100)	254 (76)	42 (13)	29 (8)	9 (3)
'91~'92	51	1	1	3	-
'93	43	21	9	5	8
'94	15	10	2	3	-
'95	30	18	4	7	1
'96	50	41	7	2	-
'97	47	36	9	2	-
'98	61	55	4	2	-
'99	82	71	6	5	-

(2) 오염피해현황

◎ 사건들의 피해 내용 별 추이는 건축물 피해 및 정신적 피해가 54%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산물 및 축산물 피해가 각각 31%, 수산물 피해 7%, 기타 8% 순이다.

◎ 이는 서울 등 도심지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하면서 인근 거주민들에게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

<표 2> (단위:건수)

구분	계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농산물	축산물	내륙 수산물	해양 수산물	기타 재산
계(%)	334 (100)	179(54)	37 (11)	63 (20)	16(4)	11(3)	28(8)
'91~'92	5	2	1	1	1	-	-
'93	43	16	5	5	7	8	2
'94	15	5	3	5	1	-	1
'95	30	11	5	5	1	3	5
'96	50	36	6	5	-	-	3
'97	47	30	6	7	1	-	3
'98	62	34	6	18	2	-	2
'99	82	45	5	17	3	-	12

축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많은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표 2 참조)

2. 環境紛爭의 處理

2.1 環境訴訟의 類型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法的 規律에는 公法的 規制와 司法的 救濟의 두 가지 측면이 개재되어 있다. 그런데 環境法의 중점이 公法的 規制의 면에 치중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私法的 救濟의 면도 결코 소홀히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環境行政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公法的 規制의 비실효성이 두드러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私法的 救濟의 意義가 보다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⁴⁾

더구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1960년 민법시행과 더불어 廣義의 公害(生活妨害)의 개념과 그 실정법적 근거가 이미 확립되었으므로 어느 면에서는 私法的 救濟의 체계가 公法的 規制의 체계보다 20년 가까이 앞서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環境紛爭의 처리제도를 보면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종래의 전통적 분쟁처리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여기에 環境紛爭의 합리적 처리제도의 모색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고도 하겠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私的 救濟方法인 民事訴訟, 公法的 救濟節次인 行政爭訟, 簡易 紛爭處理方法으로 주선, 조정 및 재정제도와 형사적 제재인 刑事訴訟을 들 수 있다.

2.2 民事訴訟에 의한 救濟

民事上의 救濟에는 환경피해로 인한 損害賠償請

4) 金基洙, “公害의 私法的 救濟의 方向과 相隣關係의 構成”, 環境法研究 創刊號, p117 이러한 취약성의 원인은 ① 공해대상과 그 기준의 비현실성 ②환경분쟁에 있어서의 조정중심주의적 경향 ③사전조치의 비실효성을 들 수 있다.

求(tort claim)와 환경피해 원인행위에 대한 留止請求(injunction)가 인정된다. 損害賠償請求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金錢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留止請求는 오염피해가 발생하였다든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 그 排除 또는 豫防을 구하는 구제수단으로, 보통 조업의 정지, 제한이나 일정한 예방·개선조치 청구가 그 예이다. 환경오염피해에 관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래의 피해구제를 위한 留止請求는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가 어떠한 法的 構成에 기하여 損害賠償請求와 留止請求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環境訴訟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그것은 단순히 請求權의 存否의 판단과 관련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訴訟上 當事者適格이나 立證責任의 分配 따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環境訴訟의 法的 構成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賠償訴訟의 法的 構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가해기업의 故意過失, 違法性,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간의 因果關係, 損害額 따위를 그 요건사실로 입증하지 않으면 된다. 이러한 故意·過失의 인정범위 및 違法性의 인식정도에 대하여 학자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 不法行爲說

가해행위가 民法 제750조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不法行爲가 성립되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環境汚染被害紛爭을 不法行爲法의 영역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견해는 우리 나라의 통설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며, 미국이나 일본·프랑스 등과 그 축을 같이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故意過失 및 違法性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학설은 일찍부터 이의 규명에 힘을 기울여 왔다. 여기서 이러한 학설의 상황을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당초 학설은 일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過失의 내용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견해(防止義務違反說)가 많았으나, 이는 過失의 범위를 부당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었으므로⁵⁾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豫見 可能性이 있으며 不作為를 포함한 損害回避措置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豫見可能性設)가 유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측이 입은 손해의 종류, 정도와 가해행위의 態樣, 손해의 회피 조치 등 가해자 측의 諸要因에 地域性 등 기타 諸要因을 比較衡量 하여 손해가 認容限度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豫見可能性의 有無에 관계없이 과실을 인정하는 입장(新受忍限度論)이 우세하게 되었다.

2. 相隣關係說

우리 民法은 日民法과는 달리 獨民法 제906조를 본받아 生活妨害에 관한 규정을 相隣關係法 중에 마련하고 있다. 즉, 民法은 제217조에서 “① 토지 소유자는 煤煙, 熱氣體, 液體, 音響, 振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前項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認容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生活妨害를 相隣關係로 파악하는 동시에 침해가 容認의 한도를 넘는 때에는 가해자의 故意過失의 有無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일부 유력한 학설은 이러한 民法의 규정내용이 環境汚染被害紛爭에도 적용 가능하며, 나아가 不法行爲의 구성의 경우에 부딪히는 故意過失의 입증 곤란을 회피할 수 있고, 또한 損害賠償請求와 留止請求간에 違法性의 정도에 차이를 두는 이른바 違法性段階說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으며, 損害賠償請求와 留止請求의 法的 根據의 통일적 이해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력한 학설은 公害로 인한 손

5) 예컨대, 기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상당' 또는 '최선'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만 하면 과실은 없는 것으로 된다.

해배상은 방해에 대한 제거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民法 제205조의 적용을 통해 特殊不法行爲責任인 無過失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同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내용에 관해서도 “사실상 占有妨害에 대한 제거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 및 기업의 社會性과 公共性에 비추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인정된 賠償請求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여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損害賠償請求는 民法 제205조에 의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⁶⁾

그러나 相隣關係說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相隣關係說은 형식상으로 실정법상의 근거를 결하고 있다. 民法 제217조의 법문상으로 近隣妨害에 대하여 피해자가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相隣關係法과 不法行爲法의 적용영역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즉, 適法行爲에 의한 손해의 補償을 규정할 뿐인 相隣關係法에 의하여違法行爲에 의한 손해의 賠償을 인정하려는 것이 되어 相隣關係法의 적용한계를 부당하게 확대 해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셋째, 民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오염피해를 오로지 物權法의 영역에서만 파악하는 태도가 과연 문제의 실질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경우에는 지위의 非互換性, 피해의 一方性 때문에 이미 그 전제는 무너져 있다.⁷⁾

본인의 견해로도 이미 不法行爲說이 相隣關係說의 핵심인 容認의 문제라든가, 無過失責任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처벌 인정을 위해서는 그 행위가 不法行爲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통설 판례가 취하는 태도에 동조한다

(2) 留止訴訟의 法的 構成

1. 權利說

權利說은 구체적인 권리, 즉 絶對權이 침해된 경우에만 피해자는 留止請求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인 바, 留止請求의 기초, 즉 絶對權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物權의 請求權說, 人格權說, 環境權說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 生活利益說

生活利益說은 絶對權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피침해 이익의 성질, 정도와 침해행위의 태양 등을 형량하여 일정한도를 넘어서면 留止請求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不法行爲說이 여기에 포함된다.

不法行爲說은 物權이나 人格權 등 絶對權의 침해가 없더라도 生活利益의 침해가 있으면 不法行爲의 효과로서 金錢賠償 뿐만 아니라 留止請求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나 留止의 근거를 民法 제750조의 요건 중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不法行爲說은 드물고, 어떤 형식으로든 不法行爲의 요건을 수정하여 留止請求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 그리고 이 說의 일부는 認容限度論과 결합하여 留止의 근거를 설명함으로써 認容限度論까지 인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說은 金錢賠償의 원칙을 내걸고 있는 民法의 규정(제394조, 제763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고, 또 認容限度論의 내용도 애매하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3) 小結

위에서 우리는 賠償請求와 留止請求의 근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여러 학설이 갈라져 있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의 대립은 그 이론상의 차이야 어떻든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음이 또한 소송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당해 소송의 실질에 보다 더 적합한 구성방법을 취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6) 鄭權燮, “環境污染과 私法上 救濟”, 韓國法學教授會, 法斗 環境, p149~p150

7) 吳錫洛, “環境訴訟의 諸問題”, 三英社, 1996

2.3 行政訴訟에 의한 救濟

국가나 공공단체의 計劃行政이나 開發事業이 직접적으로 환경 파괴적인 때는 물론, 環境規制作用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음으로써 환경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行政計劃 내지 開發事業의 取消를 구한다든가 위법·부당하게 방치되고 있는 일정한 환경규제 작용의 시행을 요구하는 行政爭訟을 제기할 수 있다.

(1) 行政審判

行政廳의 積極的 行爲(공장의 건축허가 등) 또는 消極的 行爲(조업정지 명령 등)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行政行爲의 瑕疵를 이유로 그 行政行爲의 取消나 일정한 行政行爲의 이행을 구하는 行政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가 아니라 瑕疵있는 環境污染規制行政을 공격함으로써 하는 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取消審判, 無效 등 確認審判, 義務履行審判으로 구분되어 있다.

(2) 行政訴訟

국가나 공공단체의 計劃行政이나 開發事業이 직접적으로 환경 파괴적인 때는 물론, 법적으로 의무지워진 환경 규제작용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음으로써 환경피해를 유발하게 된 때에는 그 피해자는 앞에서 본 行政審判節次를 거쳐 당해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行政訴訟을 제기함으로써 救濟를 구할 수 있다.

이 環境行政訴訟은 民事上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이나 留止訴訟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저히 다른 성질을 가진다. 먼저 環境行政訴訟은 行政행위 내지 처분의 효력을 문제로 하는 점에서, 피해를 事後的으로 金錢에 의해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損害賠償請求訴訟과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 또한 環境行政訴訟과 留止訴訟은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留止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기능적으로 공통점을 갖지만, 留止訴訟은 행위자의 행위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정지시키

려고 하는데 반해, 環境行政訴訟은 행정행위 내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발동을 요구하는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환경파괴행위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겠다.

환경과 관련한 行政의 樣態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다음의 3가지 유형에 모두 包括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行政自身이 환경파괴의 원인행위를 행하는 지위에 서는 경우 (環境破壞의 當事者)
- ② 直接的으로 환경파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行政廳으로서의 지위에 서는 경우 (規制廳)
- ③ 환경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나 조업을 허가 내지 認可하는 行政廳의 지위에 서는 경우 (認許可廳)가 바로 그것이다.

1. 行政廳이 環境破壞의 當事者인 경우

이 경우는 行政廳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인 行政訴訟과 별다를 바가 없다. 즉, 제3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行政廳이 被告, 被害者가 原告가 되어 진행되는 양당사자간 소송이므로 環境行政訴訟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환경피해의 廣範圍性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3자의 보호문제가 제기 될 수 있겠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경우 行政廳의 環境破壞 行爲가 公權力의 행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行政訴訟에 의할 것인가 民事訴訟에 의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경우 民事訴訟에 해당되겠지만, 만일 公權力의 행사로 판명되어 行政訴訟에 의할 경우에는 環境破壞行爲 取消訴訟을 통해 環境破壞行爲의 違法性을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違法성이 인정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國家賠償請求를 또 提起하여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賠償받을 수 있다. 만약 違法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는 損失補償節次를 다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른 行政訴訟과 다른 점은 環境污染 加害者가 無過失責任을 진다는 것이다. 環境政策基本法 제31조는 [環境污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이라는 표제아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가 그 피

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각 사업자에게 連帶賠償責任을 지우고 있다.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공권력 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야기시킨 행정청도 環境政策基本法上의 [事業者]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하겠다.

2. 行政廳이 規制廳의 地位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 관련해서는 행정청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을 때 私人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규제를 해줄 것을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권리를 [行政介入請求權]이라고 한다. 行政介入請求權은 實體法上으로는 裁量理論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⁸⁾, 節次法의 으로도 그 실효성 여부가 문제된다.⁹⁾ 독일과 같은 [義務履行訴訟]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行政訴訟法 체계에서는 [不作為違法確認訴訟] (동법 제4조 3호)에 의해 간접적으로 실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 行政廳이 認許可廳의 地位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주민이 제3자의 입장에서 오염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하게 되는 [第3者取消訴訟]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3자라는 지위로 인해 行政訴訟法 제12조 소정의原告適格을 주민이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2.4 調整制度에 의한 救濟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절차의 迅速成과 專門成을 충분히 활용하여 環境紛爭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環境被害紛爭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91년 環境紛爭調整委員會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으로 이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행정기관에 의해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상으로 地方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서는 幹旋·調停절차만 수행하고 있고,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서는 幹旋·調停외에 주로 裁定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1) 環境被害 救濟 範圍 및 申請

環境紛爭調整 申請 대상 피해범위는 사업활동이나 기타 사람의 활동 등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驚音·振動·惡臭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발생 등의 분쟁내용을 기재한 申請書와 紛爭調整委員會의 산정가액 수수료만으로 피해에 대한 紛爭調整申請을 할 수 있다.

(2) 紛爭調整의 種類

분쟁조정의 종류는 幹旋, 調停, 裁定의 3종류가

8) 行政介入請求權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다른자에 대한 行政權의 발동으로 받는 이익이 反射的 利益이 아닌 法的利益이어야 하고 ⑥行政廳에게 규제권한의 행사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1960년 獨逸 聯邦行政法院의 "Bandsage-Urteil" 판례)

여기서 ⑥ 요건은 행정청이 규제권한행사에 대한 裁量을 가지고 있다면 충족되기 어렵다. 행정청에게 행사여부의 裁量이 있을 경우에는 규제권한 행사 여부가 행정청의 판단에 일임되어 행사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裁量은 언제나 무한정일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裁量에 속하는 사항일지라도 실질적으로 憲法과 기타 法律 및 條理에 어긋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일반화 되면서, 私人이 행정청에게 裁量의 한계를 초월한 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청구할수 있는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라는 개념이 도출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률상 裁量이 인정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하나의 결정만이 瑕疵 없는 행위로 되고 다른 결정은 모두 瑕疵있는 행위가 되면 裁量은 0으로 수렴되게 된다. 이를 [裁量收縮]이라고 한다. 裁量收縮의 경우에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을 행사하게 된다면 결국 행정청에 대해서 단일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이것은 결국 行政介入請求權에 다름없다. 논리적으로는 치밀하고 빈틈이 없는 이론이지만, 우리 현실상 바로 行政介入請求權이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일환, 環境汚染被害救濟의 公法的 考察 참조)

9) 現行法으로는 피해자가 行政訴訟法 제4조 3호 소정의 不作為違法確認訴訟을 제기한 후 勝訴判決을 받아내어 동법 제34조 소정의 間接強制를 통해 행정청의 作爲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인 取消訴訟에 비해 지나치게迂迴의이다. 행정청이 바로 규제를 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피해자의 行政介入請求權에 대해 거부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 拒否處分取消訴訟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있으며, 그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다.

<표 3>

종류	내용	처리기간
알선	◆ 비교적 간단한 분쟁사건으로 알선위 원이 분쟁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를 이루어 해결을 도모.	3개월
조정	◆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	9개월
재정	◆ 알선, 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상사건등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이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취급.	9개월

(3) 環境紛爭 調整事件 現況

'91년 이후 '99년 말까지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 총334건이 조정신청되어 299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정신청사건 종류별로는 조정 24건이 접수되어 21건이 처리되었고, 재정은 310건이 접수되어 278건이 처리되었다.

또한 '99년도에는 12월말 82건이 접수되어 전년도에 비해 신청건수가 30%정도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移越事件 37건을 포함하여 총119건 중 84건

을 처리하고 35건이 진행중이다.

2.5 형사소송에 의한 형사처벌

논의에 앞서 우리는 環境侵害行爲도 犯罪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의 환경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고 더 이상 침해를 받을 경우 인류의 生存權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조사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기준이상의 環境侵害行爲는 당연히 犯罪로 취급되며 刑罰權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게 된다. 다만 犯罪化의 구체적 기준을 어디서 확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적어도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기 이전 단계인 環境材의 직접적 침해 단계에서부터 이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환경은 침해되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그 자정능력을 잃어 복구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뿐 아니라 침해 행위의 複合性, 競合性으로 말미암아 각 행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法益保護를 이루지 못하는 특성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保護法益을 환경재의 보호라는 이익부터 파악하는 것은 環境犯罪의 유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도 통하므로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侵害犯, 具體的 危險犯, 抽象的 危險犯이 法益에 대한 侵害 혹은 危殆化에 따른 구별이기 때문이다.

<표 4>

(단위:건수)

구분	계				조정				재정			
	전년 이월	접수	종결	진행중	이월	접수	종렬	진행중	이월	접수	종결	진행중
계		334	229	35		24	21	3		310	278	32
'91		1	1			1	1					
'92		4	3			1	1			3	2	
'93	1	43	31			7	7			36	24	
'94	13	15	20			2	2			13	18	
'95	8	30	26			6	5			24	21	
'96	12	50	37		1	2	2			48	35	
'97	25	47	44		1		1			47	43	
'98	28	62	53			1	1			61	52	
'99	37	82	84	35		4	1	3		78	83	32

현재는 環境行政法내의 벌칙규정으로 제1차적環境刑法을 구성하고 다만 法益侵害가 구체적 위험이나 결과로 나타나는 加重的構成要件의 처벌만을刑法典에 규정하는 입법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근래에 들어와서 정부는 환경오염 피해의 심각성을 뒤늦게 나마 깨닫고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해 강한 刑罰을 적용함과 동시에, 그法人에 대해서도 지장폐쇄조치까지 취하는 사례를 늘이고 있는 추세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히 환경관련 特別法들의 경우 行爲者와法人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¹⁰⁾

그러나 環境事犯의 刑事的 재제는 주로 過失犯으로 형량이 비교적 낮고, 죄의식 결여와法人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환경피해와의 比較衡量이 아주 낮기 때문에 再犯의 우려가 높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특히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海上油類事故의 경우에 故意로 기름을 배출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過失로 기름을 배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법 제71조, 77조) 씨프린스호 좌초사고나 호남 사파이어호 기름 유출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한 流出量, 수백억원의 어민들의 피해, 생태계 파괴로 인한 간접피해 등을 고려하면 戀役刑에 관한 法定刑은 논외로 하더라도 罰金刑이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1989. 3. 24. 알래스카 근해에서 발생한 미국 Exxon Valdez호의 기름유출사고시 사용자인 엑손사는 벌금으로 약 1억달러 상당을 부담하였다. P&I CLUB의 담보범위는 罰科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와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法定刑의 대폭적인 상향개정이

필요하다.

3. 環境訴訟의 審理

3.1 環境紛爭의 特質

(1) 原因類型의 多樣性

環境紛爭은 다른 법적 분쟁의 경우와는 달리 그 분쟁의 원인 조성자 및 원인의 태양이 매우 다양하여 임의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체 등도 원인자가 될 수 있다.

(2) 被害의 廣域性과 多樣性

환경오염피해는 특정다수의 주민에게 광범위하게 미치고, 동일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인근 주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똑같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자연히 피해구제를 필요로 하는 자를 多衆化시킨다. 이는 곧 原告適格 및 集團訴訟의 始發點이 될 수 있다.

(3) 原因의 不明確性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즉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아주 완만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원인 발생처로부터 遠隔地까지 그 영향이 미칠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는 환경피해 원인을 인식할 수도 없으며, 피해자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의 경과에 따르는 원인상황의 변경, 소멸은 물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킨다.

(4) 違法, 有責性의 構成難

환경피해구제로서의 金錢賠償의 문제는 일반적

10) 씨프린스호 (사이프러스선적, 호유해운, 원유운송선, 144,567톤)가 태풍 페이를 만나 피항하던 중 1995.7.23 14:00경 전남 여천군 남면 소재 작도 근해상에서 수중암초에 1차 충돌된 후 표류하다가 같은 날 17:00경 같은 면 소리도 인근 암초에 최종적으로 좌초되어 기관장 송창근(남, 38세)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 실종되고 씨프린스호 좌우현 선미부분이 파공되어 연료유인 bunker-C유 약 700톤 및 bunker-A 유 약 100톤이 바다에 유출되어 여수등 전남지역 38개 마을 해역 및 부산, 경남지역 13개마을 해역을 오염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98.7.23 여수 해양경찰서는 선장을 구속하고 법인인 호유해운을 벌금 3000만원에 약속 기소하였다. 선장인 임종민은 징역 1년, 호유해운(주)은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으로 不法行爲責任 추궁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不法行爲의 요소로서의 가해자의 違法, 有責性의 문제는 일반적인 不法行爲의 경우와는 같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立證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5) 時間과 費用의 過重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특색적 요인들은 환경분쟁에 있어서의 관련 사실의 인정 내지 증거 확보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하고, 그것은 곧 비용의 증가에 직결된다. 여기서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환경분쟁의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대기업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현저한 힘의 不均衡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6) 賠償能力의 限界

환경피해는 많은 경우에 多衆性을 가질뿐만 아니라, 그 피해상태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고, 그 치료나 피해에 대한 배상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설혹 대기업의 경우나 하더라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장시간에 걸쳐 많은 비용을 들여 얻어낸 판결의 내용적 실현이 곤란해진다.

3.2 環境訴訟의 證據調査

(1) 環境訴訟 證據調査의 特異性

일반적으로 환경소송은 환경오염피해원인의 不明瞭性과 피해의 廣域性, 共通性 등으로 인해 一般民事訴訟과는 다른 특질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즉, 前者는 주로 환경오염피해 발생 메카니즘의 복잡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의 故意過失,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간의 因果關係에 대한 피해자의 立證을 어렵게 만드는 한편, 事案의 해명에

과학적,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게 한다. 또한 後者는 다수의 同種被害者를 발생하게 하여 환경소송을 集團訴訟의 형태로 몰고간다. 따라서, 피해자인原告는 과중한 입증부담을 안게 된다.

(2) 證據調查上의 諸問題

대부분의 입증방법은 檢證과 鑑定의 형태로 이루어진다.¹¹⁾ 鑑定에는 전문가의 동원이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시행에도 장시일을 요한다. 당사자 지위의 불공평성으로 경제적 약자인原告는 證明窮乏의 상태에서 檢證에 즐음한 증거방법의 수집을 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當事者の 증거수집노력을 최대한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증거 방법이 거의 전부 기업의 수중에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職權證據調查나 現場急襲에 의한 現場保存節次의 이용이 바람직하다.

3.3 環境責任의 立證

환경책임에 있어서 증명이론의 발전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리고 그것은 學界와 實務界의 공동 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環境責任의 立證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생성, 발전을 過失, 因果關係, 損害의 각부분별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며, 아울러 나름대로 그 장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故意, 過失의 立證

1. 相隣關係說

相隣關係說은 民法이 獨逸民法 제906조를 본받아 生活公害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環境責任을 不法行爲責任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부딪히는 過失의 立證困難을 극복할 목적으로 시도된 우리나라 고유의 이론이다. 즉, 環境責任을 不法行爲責任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民法 제217조의 규정에 의

11) 檢證 : 법관이 그 감각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현상을 검사하여 얻은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

鑑定 :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하여 過失의 立證이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는 물론 損害賠償請求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관한 부연 설명은 “賠償訴訟의 法的構成”편에서 앞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 二元說

環境責任의 排他的 相隣關係的 구성을 주창해온 相隣關係說은 차츰 퇴조하고 이를 相隣關係法과 不法行為法에 의하여 二元的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¹²⁾ 즉, 損害賠償請求의 경우에는 不法行為法이, 留止請求의 경우에는 相隣關係法이 각각 적용되어 불법행위적 구성을 있어서는 과실의 입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이것에 현재의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3. 危險責任說

최근 環境責任의 강화에 따라 環境保全法 제60조와 環境政策基本法 제31조가 차례로 環境責任을 규정하게 되자, 環境責任은 이윽고 無過失責任, 危險責任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危險責任說이 環境責任을 지배하는 法理로 굳어지게 되었다.¹³⁾

4. 수인한도론

수인한도론은 침해가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容忍할 수 있는 정도에 머무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留止 또는 賠償責任이 없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같은 책임이 발생한다는 이론으로서 침해의 違法性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침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법적평가로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됨이 상례일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상 이를容忍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침해에 기한 賠償請求權 발생의 예외 사실, 즉 權利障礙事實에 해당되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같은 해석은 실체법상의 피해자보호의 취지나 訴訟法上の 立證負擔의 공평의 요청에도 부

합하는 것이 될것이다. 수인한도론의 이해를 돋는 판례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大法院 97.07.22 선고 96 다 56153 판결

[出典]

판례공보 제42호, 1997년 9월 15일자 2636page
[判示事項]

- ① 인접 대지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환경등 생활 이익 침해의 수인 한도 인정 기준
- ② 環境權의 법적 성질
- ③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판결요지]

- ①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環境權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條理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環境權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環境權에 기하여直接妨害排除請求權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깨끗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生活利益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2) 全昌祚, 公害의 私法的 救濟에 관한 研究, p134

13) 畏允直, 債權各論 (재전정판), p711

유지태, 環境責任法立法論, 公法研究, 20集, p297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 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所有權에 기하여妨害의 除去나豫防을 위하여 필요한請求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請求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건물이 文化財保護法이나 建築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찰로부터 6M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M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중인 자에 대하여 사찰의 環境利益侵害를 이유로 전체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의 공사를 금지시킨 사례)

[참조 조문]

- ① 民法 제214조, 제217조
- ② 憲法 제35조
- ③ 民法 제214조, 제217조, 憲法 제35조

[참조 판례]

- ①②③ 大法院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
(공1995하, 2236)
- 大法院 1995. 9. 15. 선고 95다23378판결
(공1995하, 3399)

[원심판결]

서울 고법 1996. 11. 21 선고 95나 41804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생략)

2. 신청인의 상고이유 3.(2)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용건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이 신축될 경우 신청인 사찰 경내의 日照를 현저히 침해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日照에 관한 행정법규가 피신청인이 신축하는 위 각 건물의 부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위 각 건물에 의한 신청인 사찰 경내 토지에 대한 日照侵害時間이 일출시부터 늦어도 오전 9시 내지 10시 가량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위 건물 신축으로 일조침해를 반기게 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 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인에 한도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신청인의 상고이유 3.(3) 및 피신청인 및 그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인접 대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의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판결 참조)

원심은 신청인 사찰의 역사와 현황, 그 사찰 경내의 문화재, 주변 상황, 피신청인의 건물 부지와 신청인 사찰과의 거리와 건물의 준공후의 예상되는 신청인 사찰에 대한 영향, 피신청인 건물의 건축 목적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 한 다음, 신청인 사찰의 사찰로서의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해당하는 공사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운봉빌딩"의 신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될 환경침해의 정도와 그 수인한도, 건축주인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및 공사수급인인 피신청인의 위 "운봉빌딩"에 대한 권리와 그 제한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위 "운봉빌딩"과 신청인 사찰의 전체 경관과의 조화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지상 19층으로 건축될 예정인 위 "운봉빌딩"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 부분에 대한 공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신청인의 환경이익 보호와 피신청인 등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 사이에 조화를 피할

수 있다고 하여, 신축예정인 위 “운봉빌딩” 건물 중 지상15층 (옥탑 2층제외), 높이 72.3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일체의 공사는 금지시켰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경권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또는 사실을 오인하고 수인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생략)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운봉빌딩이 당초의 예정에 따라 신청인 사찰과 불과 6M의 거리를 둔 채 신청인 사찰 경내 전제를 내려 볼 수 있도록 높이 87.6M의 고층으로 신축하게 되면 신청인 사찰인 사찰의 日照가 침해되는 외에도 위 건물이 신청인 사찰의 전체의 경관과 조화되지 아니하여 신청인 사찰의 경관이 훼손되는 결과로 될 뿐만 아니라 사찰 경내의 시계 차단으로 조망이 침해되고, 그 한편으로 위 사찰에서 수행하는 승려나 불공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신도들에게도 그들의 일상 생활이나 종교활동 등이 감시되는 듯한 불쾌감과 위압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신청인 사찰이 종래 유지하여 온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 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할 정도를 넘어 선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위 운봉빌딩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 사찰의 사찰로서의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하게 環境權의 법리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구체적 법률규정이 없이는 環境權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因果關係의 立證

1. 意義

辯論主義가 지배하는 民事訴訟에 있어서는 當事者는 要件事實의 존재를 立證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환경오염피해의 피해자가 不法行爲의 성립을 이유로 가해자인 기업을 상대로 民事訴訟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에 因果關係가 존재함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環境訴訟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因果關係의 입증이 곤란한 것이 통례이다. 특히 손해발생의 원인물질의 특성이나 그 원인 물질의 피해자 내지 손해지역에 도달하는 경로의 규명이 현대과학의 수준으로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곤란은 더욱 가중되게 마련이다. 그 때문에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사실상 거부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쉽다.

環境被害賠償請求訴訟에서의 因果關係의 存在에 대한 立證困難은 環境紛爭 자체가 지니는 특성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결코 피해자인 原告의 입증노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環境被害救濟를 위해서는 環境被害賠償訴訟에서의 因果關係의 존재에 대한 立證責任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며, 訴訟法的 해석론의 측면에서 因果關係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행하여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손해피해자의 입증곤란을 덜어주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蓋然性理論이다.

2. 蓋然性說

일본의 실체법학자인 德本 鎭 교수에 의하여 鐵業權者の 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의 因果關係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창된 이론으로 이 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판례도 1974.12.10 선고 72다 1774 사건에서 이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상의 民事訴訟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의 증명을 위해서 『사회의 통상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행동의 기초로 할 수 있는 정도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요구됨에 반하여, 環境訴訟에 있어서는 『原告의 因果關係의 존재의 蓋然性을 증명하면 죽하고,被告는 反證으로써 因果關係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결국 因果關係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해기업, 즉 피고에게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公害被害者의 구체를 위하여 그 證明度를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 蓋然性理論의 실질적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사유이다.¹⁴⁾

- ① 환경오염의 피해자는 대체로 농어민 같은 자력이 약한 시민이 보통이어서 피해원인조사에 있어 기술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것이라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② 피해자가 가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 들어가야 하는, 가해자는 기업 기술의 비밀 유지 등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원인 물질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그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 ③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해 그 원인을 邊及的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공적 조사기관에서 그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관측기관이 미비하다.
- ④ 환경오염을 규명하는 기술의 발달은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공장기술에 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술상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 ⑤ 문제된 공장에서 어떤 물질 또는 에너지를 배출하고 있는 이상 배출자측에서 그 無害性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⑥ 환경오염배출공장의 사회적 지위는 통상 피해자에 비하여 극히 조직적이고 거대하며 인구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公害의 발생원인을 자기의 지배영역에 가지고 있으므로 원인관계에 대한 입증이原告보다 훨씬 용이하다.

그러나 蓋然性說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법적 구성, 방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는 바, 이를 크게 나누면, 그 하나는 영미법상의 證據의 優越의 法理를 도입하여 環境訴訟에 적용하려는

견해(證據 優越性)이고, 다른 하나는 事實上의 推定의 理論에 의하여 입증책임의 사실상 전환을 피하려는 事實推定說이다.

證據優越은原告가 주장하는 사실과被告가 주장하는 사실을 대비하여 어느 편의 사실이 보다 더 우세한 蓋然性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하여 결론을 도출하려는 견해이고, 事實推定說은 因果關係의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나 刑事事件의 경우와는 달리 손해의 부담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고 蓋然의 증명으로 족하나 일단 蓋然性의 문제가 입증된 경우에는 事實上의 推定의 경우와는 달리 기업은 因果關係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損害賠償責任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新蓋然性說

蓋然性說이 막연하게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고 한데 대해서 가해자측에 間接反證責任을 과하는 모습으로 명확하게 이론구성을 하는 한편 經驗則이 작용하는 영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확충하여 피해자의 입증의 범위는 완화 내지 경감하는 한편 가해자의 反證範圍는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蓋然性理論

- ① 대법원 1973.11.27 선고, 73다 919판결에서『원심은 본 건과 같은 소의 公害事件에 있어서는 문제의 가해행위와 피해사이의 因果關係의 有無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일반 불법 행위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충분한 因果關係의 입증이 없어도 족하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因果關係를 推定할 수 있는 蓋然性만 있으면 일웅 입증이 있는 것으로 訴訟上 추정되어서 가해자인被告 회사는 피해자인原告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고, 피고가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려면 因果關係가 없다는 積極的證明(反證)을 할 책임, 즉 소위 立證責任의 轉換이 있다는 전제하에서原告勝訴의 판결을 내렸으나, 우선 본 건

14) 진순석, 環境公害의 法律知識, p103

과 같은 소위 公害事件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입증에 관한 특별 취급에 관한 위 전제는 본 원이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그릇된 전제하에 신중한 증거의 취사 선택에 의한 사실 판단을 함이 없이 피고에 대하여 3,638,53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不法이 있다』라고 판시하여 薦然性理論을 否認하였다.

- ② 1974.12.10에 선고한 72 다 1774 판결에서는 「原告는 피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죽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反證을 할 경우에만 因果關係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原告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종래의 입증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입증의 범위를 완화 내지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反證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을 그 골자로 하는 것으로 위 薦然性理論을 수긍 못 할 바 아니다. 위와 같은 薦然性을 바탕으로 한 證據取捨나 사실 인정 과정에 나무랄 곳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후의 環境汚染事件에 있어 일관성 있게 인정되는 薦然性理論의 효시가 되었다.
- ③ 大法院은 그로부터 10년 후에 있은 鎮海化學事件에서 「公害訴訟에 있어서 피해자에게事實的 因果關係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해피해에 대한 司法的 救濟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장폐수와 김의 생육에 대한 피해 사이의 因果關係가 문제로 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인原告로서는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 중의 일부가 해류를 통하여 이 사건 어장에 도달하였으며 3) 그 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각 모순 없이 입증하면 이로써被告가 배출한 폐수와原告가 양식하는 김의 생육에 대한 피해 사이에 因果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옹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被告가 1) 피고 공장 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또는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률이 안전농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함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입증에 실패하면 그 불이익은 이를被告에게 돌림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확실히 薦然性說의 입장을 취하였다.

④ 최근에 大法院은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公害로 인한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訴訟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 물질이 물을 媒介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公害 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因果關係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自然科學的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公害訴訟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因果關係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公害로 인한 司法的 救濟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隱蔽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社會衡平의 觀念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繁社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薦然性理論에 의하여 因果關係가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薦然性說의 입장을 再確認하였다.¹⁵⁾

- (3) 손해의 입증
침해로 말미암아 초래된 손해를 財產的 損害와

精神的 損害로 구분함이 없이 포괄적인 형태로 과 악하여 賠償請求를 하는 包括請求論이 있다 이것은 일본의 4대 公害訴訟에서 변호인단에 의하여 시도된 것으로서 그 후 藥害訴訟에서도 이용되는 등 널리 이용되고 있다.¹⁶⁾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先例가 없고 학설의 논의로 활발치 못하나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도입에 앞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4. 환경소송의 현대적 과제

4.1 提訴上의 課題

환경오염피해의 특징은 피해의 廣域性과 共通性에 있는 만큼 環境訴訟은 처음부터 集團的 被害의 救濟를 겨냥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에 이르는 少額被害者の 보호에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같은 사실이 뜻하는 바는 環境訴訟에 있어서는 “集團的” 提訴權의 도입 내지 확장의 요청이 그 만큼 크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¹⁷⁾ 더구나 “전형적 힘의 불균형상태”에 빠져있는 환경오염피해자 개개인이 막강한 피해기업¹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함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이들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보호단체에게 이른바 法定訴訟擔當의 地位를 부여해 줄 필요성이 있게 된다. 獨逸의 不正競爭防止法 제13조 제1a항 1문에서 단체 고유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이익보호의 목

적만으로 소비자보호단체에게 留止請求의 권리를 부여하여 提訴의 길을 터주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상으로는 民事訴訟法의 전면적 개혁 내지 특별법의 제정이 없이는 이러한 폭넓은 當事者適格의 인정이 무리인 만큼 개별법규에서 當事者適格을 확장하여 이 문제를 一般民事訴訟의 과제로 수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2 立證上의 課題

일반적으로 環境訴訟에 있어서는 환경오염피해 원인의 不明瞭性으로 인하여 가해자의 故意過失,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의 因果關係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 가해자의 故意過失에 대하여는 環境政策基本法 제31조 제1항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海洋汚染防止法 제37조의 2 제1항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된 기름 또는 재산물에 의한 해양의 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때에는 그 기름 또는 산업물을 배출한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推定規定을 두고 있는 관계로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직 因果關係에 대한 입증은 극심한 곤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獨逸環境責任法 제3조 제1항과 제6조의 推定規定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특히 제6조 1항 규정¹⁹⁾을 적용하면, 因果關

15) 대법원 97.06.27 선고 95다 2692판결

16) 판례시보 866호 21변이하 참조

17) 民事訴訟法 제48조는 選定擔當者制度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의 選定當事者가 되기 위해서는 選定者에 의한 選定行爲가 필요하고, 판결의 효력도 選定當事者와 選定者에게만 미친다. 또 제18조의 非法人的當事者能力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과 대표자의 정합이 있어야만 한다. 임의적 訴訟信託의 형식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그역시 다른 사람에게는 既判力を 미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을 주목적으로하는 權利信託은 信託法上 금지되어 있다(信託法 제7조) 또 必要的共同訴訟에 있어서는 公同信託人 중 1인이라도 빠지면 當事者適格조차 흡결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현행 民事訴訟法은 우선 當事者適格과 既判力의 주관적 범위의 문제 때문에 集團訴訟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8) 가해기업은 흔히 독점자본을 등에 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쟁한 법률전문팀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19) 제 6조 (원인의 추정)

①개개의 사례에 있어서의 사정에 비추어 시설이 손해의 원인이 되기에 적합한 때에는 그 손해는 당해 시설 때

係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때에 그 존재가 추정될수 있다. 즉, 환경오염피해자가 피해발생사실을 입증하고 다시 오염과정을 더듬어 올라가면 가해기업까지 도달한다는 시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가해기업측에서 자기가 원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주장입증(間接反證)하지 않는 한 因果關係는 긍정된다. 또한 가해기업측은 더 나아가 이같은 사실의 존재와 다른 오염원의 존재가 競合될 수 없는 사실까지 입증하지 않으면 因果關係는 부정되지 않는다.

한편 동법 제9조, 10조는 환경오염피해자에게 기업에 대한 情報要求權 및 행정청에 대한 정보제공요구도 허용하고 있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損害額의 입증문제에 관해서도 잠시 보기로 하자. 종래 損害賠償請求소송에 있어서 손해는 收入을 기초로한 逸失이익을 중심으로한 財產의 損害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慰藉料로 나누어 二元의 인 구성을 한 뒤에 개별적인 손해의 항목을 합산하는 식으로 손해액을 책정하여 왔다. 그리고 한편으로 損害賠償訴訟에 있어서는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은 집행이 불능한 것이다. 따라서 環境訴訟에 있어서도 가해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환경오염피해자의 청구는 民訴法 제227조 제1항의 의미에 있어서 '특정'이 요구된다. 또 환경오염피해자는 일반원칙에 따라 신청된 損害賠償額에 관하여 법원의 확신을 일으키는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環境訴訟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한 개별입증의 불합리와 곤란·번잡이 다른 일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는 만큼 손해의 定額化 내지 포괄적 파악은 하나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4.3 司法的 救濟의 限界와 活用方案

(1) 司法的 救濟의 限界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民事訴訟으로 損害賠償請求나 留止請求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제수단이 된다고 하겠으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 ① 막대한 訴訟費用과 訴訟의 長期化
- ② 立證上의 困難 (특히, 因果關係의 立證)
- ③ 事後的인 解決策
- ④ 現行民事訴訟制度의 集團的 紛爭의 解決수단으로서의 기능의 결함
 - 현행소송제도는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유능한 訴訟擔當者에 의한 소송의 수행이나 대량적 구제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2) 司法的 救濟의 活用方案

1. 請求內容의 單純化

- 특히 賠償請求와 관련된 문제로서 종래의 배상에 있어서는 손해를 精神的 損害와 財產의 損害로 양분하고, 다시 財產의 損害를 積極的 損害와 消極的 損害로 양분하여 賠償請求를 해 온 관계로 그 개개의 손해의 입증에 있어 커다란 곤란이 따랐고, 그에 대한 증거조사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피해의 一元的 파악과 請求內容의 單純화가 요청된다.

2. 事件의 集團的 處理

- 소송의 탄력적 운영이나 간이 소송제도의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執行의 容易化

- 환경오염피해유지사건의 主文이 집행기관의 특별한 해석을 요함이 없이 법규에 따라 바로 집행할수 있도록 그 내용이 구체적, 한정적이어야 한다.

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적합성은 조업의 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 및 농도, 기상조건, 손해발생의 시간 및 장소, 손해의 태양과 개개의 사례에 있어 손해의 원인으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작용한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다.

4. 履行의 確保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원상회복이 어렵고 심리기간도 장기적이므로 현상의 유지나 그 변경을 위한 假處分制度나 容認賠償額에 대한 假執行宣告制度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다.

5. 廣範圍한 訴訟救助

참고문헌

- 이상규, [環境(公害)判例의 研究], 三英社, 1993
김종민, [環境法], 三英社, 1993
곽윤직, [物權法] 재전정판, 박영사, 1992
곽윤직, [債權各論] 재전정판, 박영사, 1993
이재상, [刑法各論], 박영사, 1998

- 이재상, [刑事訴訟法], 박영사, 1997
오석락, [環境訴訟의 諸問題], 三英社, 1996
석종현, [一般行政法 (上,下)], 三英社, 1997
김철수, [韓國에서의 環境權과 環境立法], 1995
권영성, [憲法學概論], 法文社, 1998
김기주, [公害의 私法的 救濟의 方向과 相鄰關係的 構成], 環境法研究 創刊號
유지태, [環境責任法立法論], 公法研究 20集
이일환, [環境污染被害救濟의 公法的 考察]
정권섭, [環境污染과 私法上 救濟], 韓國法學 教授會
진순석, [環境公害의 法律知識]
이영섭, [新民事訴訟法 (上)]
전창조, [公害의 私法的 救濟에 관한 研究]